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25 호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규 칙

- 규칙 제8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2
- 규칙 제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8
- 규칙 제8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21

공 고

- 공고 제2013- 1237호 2013년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 사업 참여기업체 모집(변경) 23
- 공고 제2013- 12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4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21일

남동구 규칙 제8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02	517	13	68	17	187
3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59	28	2	8	2	19
행 정	36	19	2		1	14
의 무	4			4		
시 설	3	3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1				1
행정 · 시설	2	2				
의무 · 간호	1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 시설	3	1				2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환경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1			1		
행정 · 보건 · 의무 · 의료기술						
6급 소계	184	139	6	15	5	19
행 정	100	74	6		3	17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6	6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5	15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사회·시설	1	1				
	7급 소계	264	173	3	22	5	61
	행 정	121	72	3	1	3	42
	세 무	25	25				
	전 산	3	3				
	사회복지	29	10				19
	공 업	4	4				
	농 업	1	1				
	녹 지	6	6				
	해양수산	1	1				
	보 건	9			9		
	의료기술	4			4		
	간 호	5			5		
	환 경	8	8				
	시 설	34	34				
	방송통신	2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2				2	
공업·환경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3			3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240	151	1	17		71
행 정		123	72	1	1		49
세 무		10	10				
전 산		4	4				
사회복지		33	12				21
공 업		7	7				
농 업		2	2				
녹 지		5	5				
보 건		8	1		7		
의료기술		5			5		
간 호		3			3		
환 경		6	6				
시 설		23	2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4	3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행정·해양수산		1	1				
9급 소계		48	21		5	5	17
행 정		22	5			5	12
세 무		4	4				
전 산		1	1				
사회복지		5	1				4
녹 지		2	2				
보 건		5			5		
시 설		4	4				
행정·사회복지		5	4				1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상당 소계							
비서요원							
기능직 계		76	39	6	3		28
6급 소계		9	9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4	1		1		2
사 무		2	2				
조 무		1	1				
사무·조무							
7급 소계		34	20	4	1		9
건 축		1	1				
전화상담		1	1				
전 기		1	1				
기 계		2	2				
운 전		13	6	1			6
사 무		13	9	3			1
조 무		3	2				1
사무·조무							
8급 소계		30	9	2	1		18
기 계		2	1	1			
운 전		11	1				10
사 무		9	2	1			6
조 무		7	6				1
간호조무		1			1		
기계·운전							
사무·조무							
9급 소계		3	1		1		1
운 전		3	1		1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수산분야 장기 결원해소 및 운전원 상위직급 특정부서 일괄 배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렬·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일반직 : (구본청) 행정8급 1명 ⇒ 행정·해양수산 8급 1명으로 조정
 - 기능직 : 운전6급 4명을 구본청에서 구본청, 직속기관, 동으로 분산배치

직급 구분	운전6급					운전7급					운전8급				
	구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구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구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행	4					4	1	1		7					11
개정(안)	1		1		2	6	1			6	1				10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21일

남동구 규칙 제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국·단장은”을 “실·국장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난안전과장은”을 “안전관리과장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중 “재난방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을 중 “출장소장”을 각각 “사업소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홍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을 “안전행정부”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9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기획예산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구 직제 및 정원관리(무기계약근로자 포함)
	4.	조직 및 인력 진단
	5.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7.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구정발전시책 및 구민 제안(창안)제도 운영
	10.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1.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2.	민간위탁사무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13.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4.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자매결연 사업 포함)
	15.	공무 국외여행 추진
	16.	해외정보 및 자료수집
	17.	구청 백서 발간
	18.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19.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20.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운영
	21.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2.	투·융자 심사에 관한 업무
	23.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무
	24.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6.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7.	예산 배정에 관한 사무
	28.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변경사용
	29.	기금운영 총괄조정
	30.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무
	31.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무
	32.	민자 유치사업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3.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무
	34.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탁금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
36.	성과관리제 및 자체평가 업무
37.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38.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39.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의 법제심사
40.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포
41.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4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
44.	의회 운영 지원
45.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46.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7.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48.	통계의 심사, 통제, 분석, 공표
49.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0.	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관한 업무
51.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52.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복지정책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무
	8.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무
	10.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
	11.	보건복지행정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2.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무
	13.	한센 양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4.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무
	15.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문화체육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향토 문화재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4.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및 인쇄 등록에 관한 사항
	6.	구사 편찬 사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7.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8.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9.	국내 여행업에 관한 재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관광 음식점에 관한 재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관한 재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유통 관련업자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13.	유통 관련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생활·직장체육 활동의 지원
	15.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6.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17.	건전 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8.	건전 생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19.	공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20.	2014 아시안게임 지원에 관한 사무
	21.	남동체육관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2.	남동체육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건설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 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
	3.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수리 등에 관한 사무
	4.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지하도경 상가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도로굴착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10.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건설기계관련업무총괄및건설기계등록에관한사무이외의 건설기계관련업무
	12.	공공하수도 신고 및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 하천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5.	소하천의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6.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7.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8.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교량 등 구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사도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기타 도로 시설물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사업 관련 보상 등에 관한 사무
24.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 징수에 관한 위탁 사무
25.	골재채취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6.	도로점용허가등에관한사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에한함.단,노점상·노점판매대는제외)
27.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28.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9.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0.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무
33.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
34.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5.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과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신발생위법건축물(무허가)정비등에관한사무(GB,도로및인도제외)		
	4.	향측적출위법건축물조사및정비등에관한사무(GB,도로및인도제외)		
	5.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2.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4.	통계(건축, 주택) 업무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19.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0.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2.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23.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24.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28.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29.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0.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31.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32.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33.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4.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5.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도시관리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관리과	1.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수용		
	2.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 지급		
	3.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고시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8.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9.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1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1.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12.	기존지구 체비지 관리
13.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무
15.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7.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18.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
19.	구획정리 사업 관련 각종 공사시행
20.	구획정리 특별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2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도시경관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경관과	1.	도시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시경관위원회설치및운영
	3.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경관 협정 및 운영회에 관한 사무
	5.	경관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6.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
	8.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관한 사무
	9.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0.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조성 사무
	11.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한 사무
	12.	가로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로상불법상행위단속및철거지원(단,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제외)
	14.	도로상적치물단속및정비에관한사항(단,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제외)
	15.	노점상판매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안전관리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3.	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6.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7.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8.	자연재난 대응 총괄
	9.	자치단체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매뉴얼 통합관리(24개 행동매뉴얼)
	10.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1.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지원
	12.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민·관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
	13.	특사경지원및업무총괄
	14.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5.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16.	공익근무요원 관리
	17.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8.	총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19.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	민방위훈련, 교육의계획수립 및 시행
	21.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22.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23.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4.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5.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26.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27.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8.	핵 및 화생방 방호 등에 관한 사무
	29.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대책 수립 및 추진
	30.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자원관리

31.	재해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총괄
32.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3.	재난대비 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34.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무
35.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36.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등에 관한 사무
37.	지진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38.	지진가속도 통합 계측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9.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0.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41.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무
42.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43.	지역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4.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45.	재난대비 상시관리 및 긴급수습체제 구축
46.	자연·인적재난 응급복구대책의 수립추진
47.	재해구호에 관한 사무
48.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4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50.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1.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2.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53.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55.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건강증진과]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강증진과	1.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 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
	6.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0.	영양플러스사업
	11.	국민영양관리사업
	12.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13.	운동처방실 운영
	14.	절주 및 조기음주예방사업
	15.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16.	운동지도 및 상담사업
	17.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18.	건강검진수검자 건강상담
	19.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노인의치보철사업
	21.	불소용액양치사업
	22.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23.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24.	치과진료실 운영
	25.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 업무
	26.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7.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
	28.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사업
	29.	임산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업무
	30.	모유수유 클리닉 사업
	31.	임산부 등록 관리 사업
	32.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
	33.	산모 건강관리 사무

34.	난임부부 지원 사업
3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3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사업
37.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8.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 업무
40.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관련 업무
41.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관련 업무
42.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업무
43.	B형간염 주산기감염사업 관련 업무
44.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사업 관련 업무
45.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
4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7.	방문건강관리사업
48.	재가암환자관리사업
49.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50.	국가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51.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52.	희귀난치의료비지원관련업무
53.	지역사회건강조사
54.	정신보건사업
55.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지원
56.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5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업무
58.	알콜예방 사업
5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
60.	생명존중문화 조성
6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사업
62.	정신병의원관리에 관한 업무
63.	치매관리사업
64.	치매상담센터 운영
65.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지원
66.	치매조기검진사업
6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9.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별표 2의2]

[지식정보센터]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지 식 정보센터	1.	도서관 시책사업
	2.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작은도서관 등록신고업무
	4.	구립도서관 운영 일반사항
	5.	구립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구립도서관 공연장 및 시설 관리
	7.	구립도서관 자료 관리
	8.	도서관 전산관리
	9.	도서관 회원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구립도서관 건립 및 증.개축사업
	11.	수수료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13.	작은도서관 정기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14.	유물, 도서의 기증, 구입, 전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운영 국정평가에 관한 사항
	16.	소래역사관 운영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안전조직 개편, 남동체육관 인수 운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2013.2월 조직편과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사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서별 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과 분장사무 전면 재조정
 - 신설 23개 사무, 폐지(삭제) 10개 사무, 용어변경 11개 사무
- 남동체육관 인수 운영에 따른 사무 신설(문화체육과)
 - 남동체육관 대관 및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기타 행정여건 변화 반영
 - 신설(누락) 10개 사무, 폐지(삭제) 4개 사무, 용어정비 16개 사무
 - 부서 간 이관(협의 완료) 2개 사무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 미반영된 기구 및 직위명칭 일괄정비 사항 반영 등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21일

남동구 규칙 제8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가목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 중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 중 “7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난 극복과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 각종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예산산출 기초의 적정성 검토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상사업 금액 변경
 - 3억원 및 2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조정 (제3조제1호 각 목)
 - 7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조정 (제3조제2호 각 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37호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남동구에서는 베이비부머등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고용창출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사업)체에서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13. 8월 ~ 11월

나. 지원대상

- 임금지원대상기업 : 인천시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체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 정년도래자를 재고용, 정년연장한 경우 포함)
- 임금지원 대상자 :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가 정년(만55세 이상)으로 퇴직한 후 재고용·정년연장 되어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남동구 거주)

※ 2013년도 기업체 재고용·정년연장자

※ 임금지원대상자 선발은 기업체 자체 채용기준 및 절차에 따름

다. 지원조건 및 기간 :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계속유지 기업(입사일로부터 최장 4개월간)

라. 지원수준 : 기업체별 1인당 월60만원 상당의 임금을 남동구에서 지원(근로자 출근율에 따라 월별 일할계산 지급)

마. 지원방식 : 채용⇒사업참여 및 채용확정자 명단 통보(기업체→구)⇒고용지원 약정체결⇒지원금신청(기업체→구)⇒지원금 지급(구→기업체)

2. 대상기업 자격요건 : 인천시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영이 견실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이나 사업장은 신청 불가)

【지원제외 대상기업】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등 중요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체

3. 접수방법

가.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확인서류(종사자 수 확인), 취업규칙(결장 및 정년이 명시된 페이지 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나. 접수기간 : 2013. 8월부터

다. 접수방법 : 팩스(453-5778) · 이메일(kny2124@korea.kr) 또는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 남동구청 사회경제정책과

4. 문 의 : 남동구 사회경제정책과 (☎453-6060)

2013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업 체 현 황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소 재 지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4대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			
	담 당 자 연 락 처 (모든항목 반드시 입력)	(성명)		(휴대폰)		
	(전화)		(FAX)			
	(메일주소)					

채용확정자명단							
연 번	성 명	근무부서	직 무	주민등록번호	출신 학교	근로계약 체결일	연락처
1				—			
2				—			
3				—			
4				—			
5				—			

2013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운 영 절 차	재고용·정년연장 → 근로계약체결(채용확정자-사업주) 및 근무개시 →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확정자 명단 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약정체결(남동구↔사업주)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4대보험 확인서류(종사자수 확인) ③ 취업규칙(결장 및 정년이 명시된 페이지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사본) ⑤ 근로계약서(사본)
	※ FAX 및 e-mail 제출 가능

※ 문의처 : 남동구청 사회경제정책과 ☎032-453-6063, FAX: 453-5778, e-mail: kny2124@korea.kr

()월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지급희망 금융계좌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지원금 신청금액	금 (₩) 만원정)				지원금 신청 대상기간	2013. . . ~ . . .	
지 원 금 산 출 내 역	구분	성명	운 영 상 황		근무일수	출근일수	신 청 금 액
			약정근로중 (채용일)	중도해지 (퇴사일)	(회사규정 근무일)	(근로자 출근일)	합 계 원
	1		, .	, .	일	일	원
	2		, .	, .	일	일	원
	3		, .	, .	일	일	원
	4		, .	, .	일	일	원
	5		, .	, .	일	일	원
※ 회사규정근무일수 : 예, 월~금 회사규정근무일수 [무(유)휴일(토, 일) 제외] ※ 근로자 출근 일수 : 회사규정 근무일내 출근한 총 일수 예시) - 해당월 회사규정근무일수가(월~금) 21일이고, 이 중 근로자 출근일수 10일인 경우 - $600,000 \times \text{출근일수}(10\text{일}) / \text{회사규정근무일수}(21\text{일}) = \text{신청금액 } 285,710\text{원}$ (원단위 절사 청구)							

- ※ 지원금은 회사규정 근무일수 만근한 경우 1인당 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청
- ※ 결근, 중도해지 발생시 출근율 비례하여 일할 산정 후 지원금 신청
- ※ 첨부서류 ① 급여대장 ② 출근부 ③ 급여(이체)지급 확인 서류
- ④ 지원대상자 4대보험 가입을 알 수 있는 서류(4대보험증 탁본 제출, 첫월 및 지원금 마지막 신청월)

위와 같이 남동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표

직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지원약정서

제1조(목적) 남동구(이하“갑”이라한다)와 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대상기업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갑”이 근로약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남동구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임금지원대상자에게 근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임금지원대상자 **채용(근로계약체결일)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유지 기업(사업)체에 채용일로부터 최장 4개월**(2013.11.30 기한 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남동구 지원금 지급) ① “갑”은 약4개월의 적정한 임금지원대상자 근로기간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월 60만원상당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급수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임금지원 약정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인원 감원, 해고 등의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약정」을 해지하거나, 「임금지원대상자 본인의 임의사직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 이외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임금지원대상자가 결근 또는 임의사직하는 경우 해당 월에 임금지원대상자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일할 지급한다.

④ “을”은 매 근로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임금지원대상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급여대장 사본, 출근부 사본, 임금확인증을 첨부한 [서식2] 중소기업 고령자(베이비부머) 고용안정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임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급여 외의 당해 기간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급여수준에 따르되, 지원한도는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기업체가 지급하는 급여수준 기준으로 최대 월 60만원상당이내로 한다.

제6조(남동구지원금의 반환) “을”은 본 약정 또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벌) “을”은 약정근로 중인 임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을”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원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은 약정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인원 감원, 해고 등의 회사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약정근로의 중단 등) “을”은 약정된 근로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갑”은 “을”의 약정근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및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 .

(갑) 남 동 구 청 장 직인

(을)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인 또는 서명

※ 계약체결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아래의 난에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별표 형식 변경
 - 위임자(소관부서), 위임사무, 근거, 수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
(타 지자체 별표 형식 조사 후 우리구 조직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식 도입)
 - 나. 보건소 위임사무 재정비
 - 조직개편 전 식품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의 일체정비
(신규 위임사무 추가, 불필요한 사무 삭제, 근거법령 수정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별표 형식 변경
 - 위임자(소관부서), 위임사무, 근거, 수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 (타 지자체 별표 형식 조사 후 우리구 조직체계와 가장 유사한 형식 도입)
- 보건소 위임사무 재정비
 - 조직개편 전 식품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의 일제정비 (신규 위임사무 추가, 불필요한 사무 삭제, 근거법령 수정 등)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총무과)	1.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 회 사무국장
	2.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법」 제84조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92조	보건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22조 「약사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의료기기 변경신고 다. 휴·폐업 신고 라.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32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1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2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7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8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7조	보건소장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의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9조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결핵예방법」 제15조 「결핵예방법」 제18조 「결핵예방법」 제10조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제19조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보건소장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모자보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8.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1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제18조	
	2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1조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등	「정신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보건소장
	바. 청문	「정신보건법」 제20조	
	사. 보고·검사 등	「정신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정신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5조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23.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5조	
	25.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26.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	보건소장
	2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27조	
	28.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라.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청문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타.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파. 위임 및 위탁 하. 수수료 거. 과태료 부과징수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 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같은 법 부칙 제5839호 (1999.2.8) 제3조	보건소장
	29.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다. 면허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0.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나. 식품 등의 재검사 다.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등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명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바. 영업 승계 사. 식품위생교육 아. 품질관리 및 보고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 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카. 위생등급 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파. 위생수준 안전평가 하. 시정명령·시설 개수명령·허가취소 등 거. 폐기처분 등 너. 위해식품 등의 공표 더. 품목 제조정지 등 러.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버. 폐쇄조치 등 서. 청문 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부터 제78조까지 같은 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처. 위반사실 공표 등 커.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터. 식품진흥기금 펴. 포상금 지급 허. 수수료 고. 과태료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보건소장
	31.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결격사유 다. 면허취소 라. 면허증의 재발급 마. 면허증의 반납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등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영업허가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포상금 지급 타. 권한의 위임·위탁 파.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보건소장
	34.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나. 사건 송치 및 의견서 작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제21호, 같은 법 제6조 제6호·제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65조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지식정보 센 터 장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지식정보 센 터 장
구청장 (문 화 체육과)	1. 남동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남동문화 예술회관장
	2. 소래역사관 및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식정보 센 터 장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복지정책과)	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구청장 (노인장애인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2.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처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3.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조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동 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동 장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동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9. 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3. 8. 21 ~ 9. 2(13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식품제조 가공업	255	남한강 푸드(주)	성*노	인천 남동구 장수동 772-1	사업자등록폐업	2011.12.31	2013.9.3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남한강 푸드(주)	성*노	인천 남동구 장수동 772-1	사업자등록폐업	2011.12.31	2013.9.3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9. 2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453-2753